

# 기안용지

(전화 : 713 - 6156 )

문류기호 문류번호	별부 0223
보통기안 문류기안	인 10.5.3.1.
수신기 보통기안	영 7
시행일자	1990. 1.
보통기안 관리 담당 직위 직명	지정 직명
기안배급자	별부 제정
성명	
수신 장소	기안참조
비고	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증개정규정

시행성 특별회급	
시 장	
결재 직명	통제 직명
검열 1990. 1. 20 등재관	
1990. 1. 20 직명	

훈령제 691 호

90/1/20

( 제 1 안 )

수신 : 내부관계

제목 : 같은 것

## 1.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증개정규정

윤

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

보에 게재 방정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방정안 1부.

( 제 2 안 )

수신 : 공보관

제 목 : 시보 게재

결재

1. 부칙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한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69/ 호 1부. 끝.

( 제 3 안 )

수 신 :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

제 목 : 훈령 발령

1. 교육01141-39 ( 90 . 1 . 18 ) 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

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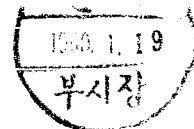
첨 부 : 서울특별시훈령 제 69/ 호 1부. 끝.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증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1월 20일

서울특별시 장 고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69/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중 고득점자 순위로 3인에게 수여한다." 를 "직급별 기본교육  
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이 2주이상 이고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자 중 성적우수  
자와 우수분임에게 수여한다."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 3 조 제목중 "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"을 "시상시기 및 시상방법"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 
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.

1.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30만원
2.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50만원
3.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과정은 100만원

제 4 조 제1항중 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" 을"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 
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원"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"시상금의 집행"을 "시상의집행"으로 "시상금의지급총액"  
을 "지급총액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2항 제2호중 "시상금지급금액"을 "시상금액"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.